무배당 한화생명 퇴직연금보험 이율보증형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필히 참고 바랍니다.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했다고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면, 추후 해당 내용에 관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본 상품은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보험기간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시 약정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한화생명** 홈페이지(www.hanwhalife.com) 또는 퇴직연금 콜센터(1588-6309)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상품 내용

구분	내용	
상품유형	원리금보장형	
상품명	**한화생명** 퇴직연금보험 이율보증형	
가입대상	퇴직연금을 가입한 기업[DB] 또는 개인[DC·IRP]	
상품개요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된 부담금으로 설정된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적용이율을 확정 적용하는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이율적용	가입자가 설정한 상품의 만기(1년, 2년, 3년, 5년)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적용하며, 각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됩니다. 적용이율은 **한화생명** 홈페이지(www.hanwhalife.com)에 매월 공시됩니다.	
상품구조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상품에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이 설정되며, 계약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이율보증기간)을 설정합니다. *이율보증기간 1/2/3/5년 납입된 부담금은 단위보험별로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일까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부리·적립되며,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이율보증기간)	1/2/3/5년(※DB의 경우 기간지정식 가능)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적용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하며, 각각 설정된 단위보험 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됩니다.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고채 수익률과 회사채 또는 지방채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은 매월 공시되며,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hanwhalife.com > 퇴직연금 > 상품/운용가이드 > 원리금보장형)	

무배당 한화생명 퇴직연금보험 이율보증형 상품설명서

구분	내용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 보호 및 상품안정화를 위해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 계약이전, 보험 세목이 변경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중도해지이율은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X 80%]로 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DB/DC	IRP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약관 제17조(중도해지)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가입자의 퇴직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6. 다른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7. 법 제 16조 제4항에 의해 반환되는 경우 8.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 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변경 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9.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 방법의 승인이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취소되어 해당 사전지정운용 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10. 법 제22조에 따라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 1~5번 항목은 DB/DC공통, 6~7번 항목은 DB에 해당 8~10번 항목은 DC에 해당	1.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2. 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4.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 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변경 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5.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 방법의 승인이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취소되어 해당 사전지정 운용방법으로 운용중인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6. 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적립금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 7.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가입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8. 약관 제16조(중도해지)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7, 8번 항목은 기업형 IRP에 해당
만기 재설정	가입자는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자가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 설정을 위한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만기상환 합니다. (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 : 상기 만기 재설정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1일까지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설정 합니다. **단,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라면 선정한 이후에는 자동재예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한화생명** 퇴직연금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외 이율보증형 상품 운용에 대한 별도의 비용(수수료)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기타 안내사항(금융소비자 권리보호 안내 관련)

구분	내용	
예금자보호여부	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위법계약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의무위반 등 위법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이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담당자나 콜센터(1588-630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anwhalife.com)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22, www.fss.or.kr),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63**한화생명**빌딩) 우. 07345 퇴직연금 콜센터 1588-6309 제작 법인사업부(2025.08)
준법감시인 확인필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2509-01]